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280-01

www.mogef.go.kr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 이제 그만!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

이제 그만!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차 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 6

가정폭력, 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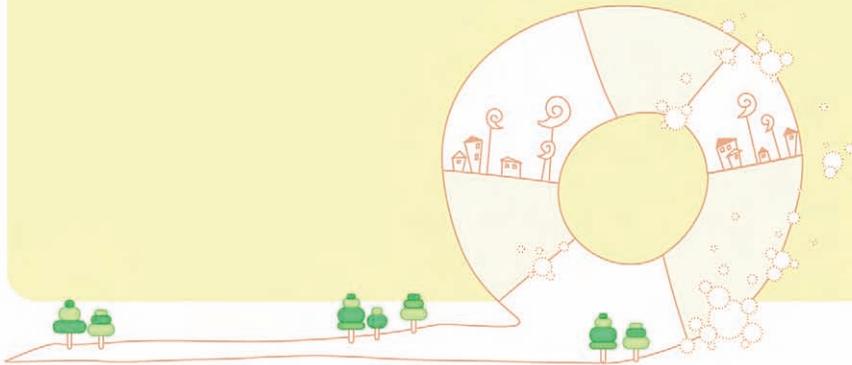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법! / 14

당신의 오늘을 보호하고 내일을 지원합니다 / 18



가정폭력 신고는 112
가정폭력 상담은 1366!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참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
숨지 마세요

당신의 가정이
폭력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드러내세요
그래서
멈추게 하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
반드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 모두 함께 라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에서의
이런 상황,
폭력입니다”

-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는 행위
- 정신적 폭력 - 신체적 접촉 없이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학대하는 행위
- 성적 폭력 - 배우자 강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실행하는 행위
- 경제적 폭력 -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 기타 폭력 -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이주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방임, 유기, 낙태 강요,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주지 않기 등의 행위 포함)

생각을 바꾸면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1.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 **아닙니다!**

이웃이나 지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 **아니, 아니요!**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또한 명백한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부부싸움은 잠자리에서 풀면 된다? ➡ **물론, 아니죠!**

부부싸움 중 행사된 폭력은 엄연히 가정폭력으로 범죄입니다. 이후 행해지는 강제적 성관계 또한 배우자 강간으로 폭력행위입니다.

4.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아닙니다!**

어릴 때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본인이 성장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가해자가 되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5.

맞고 사는 것은 참피한 일이니 숨겨야 한다? **아니죠!**

무조건 참고 숨긴다면 가정폭력은 악순환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6.

말이 안 통하니 때릴 수밖에 없다? **안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가족의 의견과 생각에 귀기울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7.

한국에 왔으니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아닙니다!**

한쪽의 언어와 문화의 일방적 강요보다는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인권감수성 체크리스트

신중하게 읽고 체크해 보세요! 폭력, 당신 안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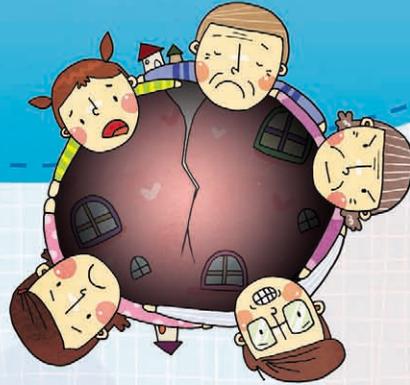
-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의 8개 문항 중 '예' 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당신과 가족을 향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용기 내어 드러내지 않는다면 마음까지 멍들고 병들게 하는 끝없는 폭력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가족을 지키세요.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전화번호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지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 상담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 |

1.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를 기억해 둡니다.
- 직접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지인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표시나 신호를 미리 정해둡니다.

2.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 당신이 폭력을 당한 부분과 그 폭력으로 인해 입은 손상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해 말합니다.
(예: 내 배를 발로 찼어요,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거실에 있는 TV를 던져서 저렇게 부서졌어요)
- 폭력을 가한 사람의 위협 때문에 말하기가 두렵다면 경찰관과 따로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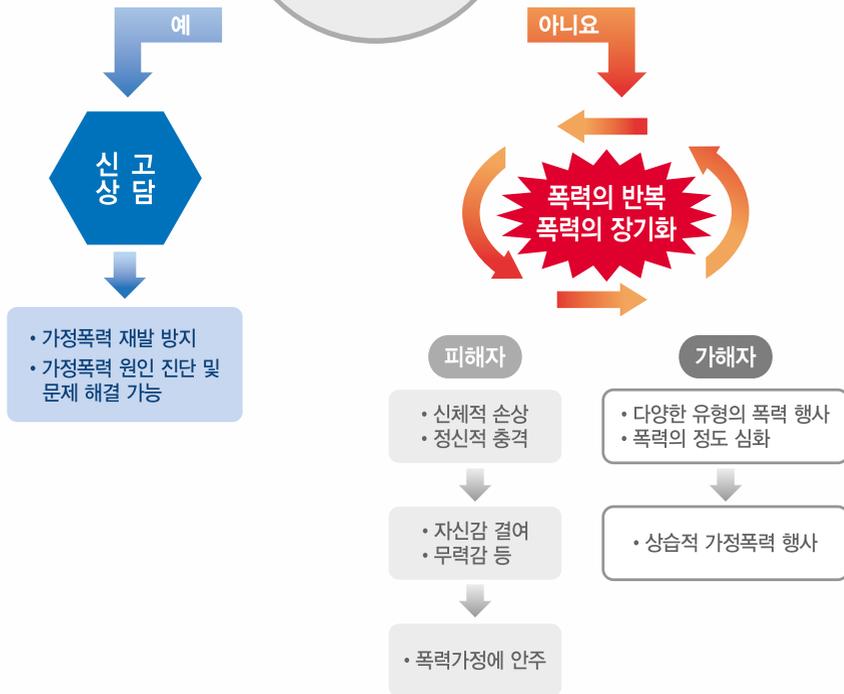
3. 가정폭력 후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안내 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합니다.

이주여성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 11개 자국어로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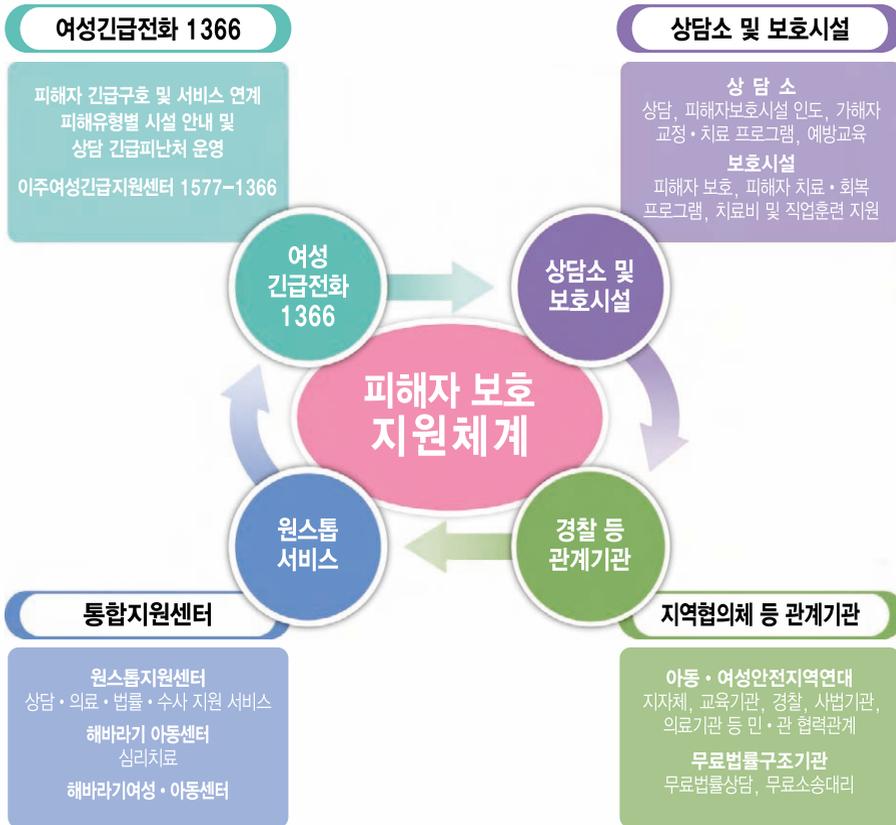
가정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발생

초기대응



가정폭력, 세상에 알리면 길이 열립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법!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장출입 및 조사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피해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

-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2. 응급조치

가정폭력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 1호.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2호.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 필요)
- 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 4호.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

3.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발생 시 행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의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 1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3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임시조치

가정폭력 발생 시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 청구가 가능한 조치

- 1호 ~ 3호 긴급임시조치 1호 ~ 3호와 동일
- 4호.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요양소 등 위탁
-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구치소 등 유치

5. 피해자보호명령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

[청구방법]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청구

[청구대상]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청구서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심리절차]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결정

[보호명령 내용]

- 1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3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휴대전화와 E-mail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판사가 임시보호명령 처분 가능

[보호명령 기간]

기본적으로 6개월,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가능

[벌칙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

[증명서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아동교육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한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는 아동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부교재비, 교복비 및 학용품비)를 지급

7.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쉼터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 중 하나)와 신분증,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

8.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당신의 **오늘**을 **보호**하고 **내일**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를 지원

[지원범위]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해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기한]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의사의 소견서 첨부 필요)

2.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 가능

■ 민사, 가사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지소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지부에 문의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증빙서류(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2,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http://lawhome.or.kr>

3.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가능

[긴급지원 절차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4. 쉼터 입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

[단기쉼터]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장기쉼터] 2년 이내

[임시보호]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각 지역 쉼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개인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캠프 등을 통해 자기 치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5.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임대조건]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하고, 임대주택 1호당 2~3세대 입주

임대 보증금은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



6.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국내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에 필요한 쉼터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쉼터 입소 후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 항공료를 지원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의 및 지원 요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1년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번호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을 비롯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당신이나 자녀에게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 **신고하세요!** 전화번호 112를 눌러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 **상담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여성폭력 원스톱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2012년 11월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Tel. 02) 2075-8794~5 Fax. 02) 2075-4793

인쇄처 : 중앙기획 · 중앙인쇄사

Tel. 02) 736-2866~7 Fax. 02) 739-8249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280-01





1년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번호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
이제 그만!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یس 빌딩

www.mogef.go.kr